

#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4 평창군수(도시경제과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 10 . 20 .
- 다. 상 정 일 자 : 1998. 11 . 3 제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2. 제 안 이 유

- 「고원눈마을」의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쾌적하고 개성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횡계도시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3. 주 요 내 용

- 상세계획구역의 결정면적 : 4개지구 348,487㎡

### 1. 시가지조성 사업지구

- 가. 횡계1리구역(면사무소 뒷편) : 133,440㎡    나. 횡계8리구역(황태덕장지역) : 79,200㎡
- 다. 오목구역(문화마을지구) : 56,857㎡

### 2. 구획정리사업

- 가. 횡계5리구역 : 78,990㎡

## 4. 검 토 내 용

- 가. 횡계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관광배후도시로서 체계적인 관광도시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도시계획재결정)을 수립, 1998.7.6일자로 강원도고시 제98-145호로 결정되고 평창군고시 98-258('98.8.28)호로 지적고시된 사항으로서
- 나. 향후 활발한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주거·녹지지역에 대하여 「고원눈마을」의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등을 입안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